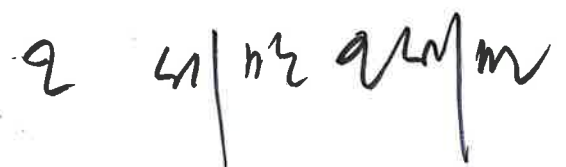


양양군의회 의결을 얻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15일

양양군의회 의장 

양양군의회 규칙 제17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10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0분이내의 발언(이하 “10분”을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10분”을 각각 “5분”으로 한다.

제66조의2제3항 중 “20분”을 “40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2(10분 자유발언) ① 의	장은 본회의 개의시에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	제33조의2(5분 자유발언) ① ----		
	원에게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			
	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10분이내의 발언(이하 “10	---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		
	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10분 자유발언 의원수는 매	회기마다 3인 이내로 하고, 발	② 5분 ----		
	언 횟수는 의원 1인당 연간5회			
	를 초과할 수 없다.			
③ 10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	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③ 5분 ----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			
	여 의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10분 자유발언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서	④ 5분 ----		
	정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언의			
	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			

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의
사진행을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66조의2(군정에 관한 질문)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의한 의원별 본질문
은 20분의 범위내에서 실시하
고, 보충질문은 시간제한을 두
지 아니한다.

-----.

제66조의2(군정에 관한 질문) ①

· ②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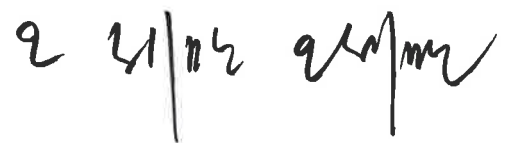
③ -----

-- 40분-----

-----.

양양군의회 의결을 얻은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15일

양양군의회 의장 

양양군의회 규칙 제18호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별표 2(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4,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u>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u> <u>하여야 한다.</u> <u>1. 7급 이상 : 20세 이상</u> <u>2. 8급 이하 : 18세 이상</u>	제9조(응시연령) ----- ----- ----- <u>18세 이상이어야</u> ----- -----. <u><삭 제></u> <u><삭 제></u>

[별표 2]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6조 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전 산 <삭제>	전 산 <삭제>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삭제>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삭제>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삭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데이터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 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 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 야, 기계분야), 조경 기 능 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별표 9]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 관련)

◎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정	일반행정		변 호 사 변 리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 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 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 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 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